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의 해상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기능과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송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 기관에 항공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등의 기능을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9명)을 증원하면서 증원하는 인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은 평가 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의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게 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청 세관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4급 또는 5급 6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7.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5의2.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지휘·감독

제11조제3항 중 “조사정보과 및 마약조사과”를 “조사정보과, 마약조사1과 및 마약조사2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관총괄과·통관검사와·물류감시과·심사과·조사과”를 “통관총괄과·통관검사와·특송통관과·물류감시과·심사과·조사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단서 중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항만물류감시1과장·항만통관검사1과장·공항수출입물류과장·공항통관정보과장·공항물류감시1과장·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여행자통관1과장·공항여행자통관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항만여행자통관과장·특송통관1과·심사총괄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괄과장·마약조사과장”을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항만물류감시1과장·항만통관검사1과장·

공항수출입물류과장·공항통관정보과장·공항물류감시1과장·공항통관검사1과장·공항여행자통관1과장·공항여행자통관2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항만여행자통관과장·특송통관1과·심사총괄과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조사총괄과장·마약조사1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6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제30항의 “마약조사과장”을 “마약조사1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㉓ 마약조사2과장은 제30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송통관과장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75”를 각각 “4,808”로 하고, 행정사무관 “121”을 “123”으로 하며, 관세주사 “759”를 “763”으로 하고, 관세주사보 “873”을 “879”로 하며, 관세서기 “1,014”를 “1,018”로 하고, 관세서기보 “767”을 “771”로 하며, 운전서기보 “79”를 “8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1”을 “174”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25”를 “13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81”을 각각 “4,814”로 하고, 행정사무관 “140”을 “142”로 하며, 관세주사 “838”을 “842”로 하고, 관세주사보 “879”를 “885”로 하며, 관세서기 “980”을 “984”로 하고, 관세서기보 “724”를 “728”로 하며, 운전서기보 “79”를 “82”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1”을 “174”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25”를 “132”로 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2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별표 8의2의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3명 및 별표 8의2의 관세서기 3명으로 본다.

[별표 1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 관련)

1.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2022년 9월 30일까지
2) 인천세관 마약조사2과	1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8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7급 5명, 8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7급 2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7명, 전문경력관 다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4명, 전문경력관 다급 9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3명, 전문경력관 다급 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심사국) ① ~ ⑤ (생략)	제5조(심사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u>	5. <u>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 제도의 운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u>
<신설>	5의2. <u>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조사의 기획·지휘·감독</u>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세관) ①·② (생략)	제11조(세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항만통관감시국에 항만수출입물류과·항만통관정보과·항만물류감시1과·항만물류감시2과·항	③ ----- ----- ----- ----- ----- -----

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협업검사센터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⑬·⑭ (생략)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⑮ (생략) ⑯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u>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u> 18. ~ 20. (생략) ⑰ ~ ㉔ (생략)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㉔ (생략)	----- ----- ----- ----- ----- ----- ----- ----- ----- ⑬·⑭ (현행과 같음)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⑮ (현행과 같음) ----- ----- 1. ~ 16. (현행과 같음) 17. <u>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및 조사(「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수입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u> 18. ~ 20. (현행과 같음) ⑰ ~ ㉔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 ㉔ (현행과 같음)
---	---

㉔ <u>마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략) <u><신설></u>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②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㉔ <u>마약조사1과장</u>----- -----. 1. ~ 3. (현행과 같음) ㉔ <u>마약조사2과장은 제30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u>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특송통관과장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75	4,808	+33
일반직 계	4,775	4,808	+33
행정사무관	121	123	+2
관세주사	759	763	+4
관세주사보	873	879	+6
관세서기	1,014	1,018	+4
관세서기보	767	771	+4

관세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0	3	+3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1	174	+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25	132	+7

신·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781	4,814	+33
일반직 계	4,781	4,814	+33
행정사무관	140	142	+2
관세주사	838	842	+4
관세주사보	879	885	+6
관세서기	980	984	+4
관세서기보	724	728	+4

관세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0	3	+3
전문경력관 나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71	174	+3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25	132	+7